

[개인정보보호규정 개정(안) 전후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2조(용어 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u>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u>를 말한다. <u><신 설></u> <u><신 설></u> 2. ~ 4. (생 략) 5. “고유식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제2조(정의) 1. ----- -----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u>를 ---. <u>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u> <u>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u> <u>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u> <u>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u> 2. ~ 4. (현행과 같음) 5. ----- <u>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정보를</u> ---.	·용어 정비 ·하위 목 신설에 따른 내용 정비 ·현행 법률 개정에 따른 본조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신설 ·현행 법률 개정에 따른 본조 제1호의2 신설 ·현행 법률 반영 및 세칙 위임에 따른 내용 정비

현행	개정(안)	비고
6.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u>유전정보, 범죄경력</u>을 말한다. 7. ~ 8. (생략) <u><신설></u>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 ⑥ (생략) ⑦ 공사는 개인정보의 <u>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u>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생략) 제5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공사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업무규정」, 「<u>보안규정</u>」 등 다른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사장은 「<u>업무분장규정</u>」 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 공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u>개인정보 보호책임자</u>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 ----- -----<u>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정보를</u>-----. 7. ~ 8. (현행과 같음) <u>9.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u>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u>-----. ⑧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 ----- 「<u>전산정보보호규정</u>」 ----- -----.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 「<u>직제규정 업무처리기준</u>」 --- 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u>이하 “보호책임자”라 한다</u>)로 -----. ② <u>보호책임자</u>는 -----.	·세칙 위임에 따른 내용 정비 ·현행 법률 개정에 따른 본조 제9호 신설 ·현행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 ·관련 내규 정비 ·현행 내규 반영에 따른 용어 정비 ·약칭 사용 ·약칭 사용에 따른 용어 정비

현행	개정(안)	비고
③ 공사는 <u>개인정보 보호책임자</u>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세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보호 분임책임자) ① (생략) ② (생략) 1. ~ 4. (생략) 5. 그 밖에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및 내규에 의하거나 <u>개인정보 보호책임자</u>가 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0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1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③ --- <u>보호책임자</u>를 ----- ----- ----- -----. 제7조(개인정보보호 분임책임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 <u>보호책임자</u>가 -----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공사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u> 제10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공사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u> 제11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약칭 사용에 따른 용어 정비 ·약칭 사용에 따른 용어 정비 ·현행 법률 개정에 따른 본조 제3항 신설 ·현행 법률 개정에 따른 본조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①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 <u>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u>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 7. (생략) ③ (생략) ④ 공사는 <u>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에 따라</u>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생략) <u><신설></u> 제14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u><삭제></u> 5. -----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 6.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u>제2항 각 호에</u> ----- ----- -----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u>⑥ 공사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u> 제14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현행과 같음)	·현행 법률 개정에 따른 본조 제2항 제4호 삭제 ·약칭 사용 ·현행 법률 반영에 따른 내용 정비 (본조 제6항 신설에 따른 일부 내용 삭제) ·현행 법률 반영에 따른 본조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② 제1항의 보유기간은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다른 법령에 보존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구체적인 보존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 업무별 분임책임자가 <u>개인정보 보호책임자</u>와 상의를 거쳐 산정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21조(안전조치의무) 공사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u>개인정보 보호책임자</u>는 제25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 8. (생략) ② (생략) 제2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사장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	② ----- ----- ----- ----- ----- <u>보호책임자</u>와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안전조치의무) ----- -----유출·<u>위조</u>·변조 ----- ----- ----- ----- -----. 제22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u>보호책임자</u>는 -----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 방법(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u> 4.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 ----- ----- -----	·약칭 사용에 따른 용어 정비 ·현행 법률 반영에 따른 용어 정비 ·약칭 사용에 따른 용어 정비 ·현행 법률 개정에 따른 본조 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u>행정안전부장관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영향평가를 <u>행정안전부장관이</u> 지정하는 평가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 ② (생략) ③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u>행정안전부장관</u> 또는 세칙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관리)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행정안전부장관에게</u>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세칙에서 따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③ (생략) <신설>	----- ----- <u>보호위원회에</u>----- ----- <u>보호위원회가</u> -----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보호위원회</u> ----- -----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관리) ① ----- ----- <u>보호위원회에</u>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26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u> ① 공사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감독기구 변경에 따른 내용 정비 ·감독기구 변경에 따른 내용 정비 ·감독기구 변경에 따른 내용 정비 ·현행 법률 개정에 따른 제26조의2 신설 및 본조 제1항,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제26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공사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세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세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현행 법률 개정에 따른 제26조의3 신설 및 본조 제1항, 제2항 신설
<신설>	제26조의4(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공사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현행 법률 개정에 따른 제26조의4 신설 및 본조 제1항, 제2항 신설
<신설>	제26조의5(가명정보의 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 법률 개정에 따른 제26조의5 신설